

【 3 】 會議錄 署名議員 選任의 件

제의년월일 : 1995. 7. 11

제 의 자 : 의 장

제안이유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

주요골자

. 회기중 의원발의 안건이 있으면 발의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

. 의원발의 안건이 없으면 선거구 순으로 2인씩 선임.

【 4 】 榕州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제출년월일 : 1995. 6. 21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 및 일부조항에 의거 양주군군세조례의법 적용 조항과 용어의 정의등을
일치시키기 위함.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 제26조는 취득세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부과고지

에 의한 납기연장의 경우에는 법 제41조 및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토록 개정 (안제7조)

나. 법 제5장에서 규정된 감면은 법 제292조 및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조
례삭제

다.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800원에 1,000원으로 인상조정 (안제15조)

라. 법 제266조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농수축협 및 임업 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을 경감하도록 관련조항을 삽입하고, 경감율 규정 (안제19조, 제49조)

마. 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를 양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토록 개정 (안제38조)

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및 관계 법령의 폐지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과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폐지 규정을 삭제 (안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50조, 제53조, 제61조, 제63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제7조증“(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제1항의 특별
징수 의무자가 다음에 “법 제26조의 2 및”을 삽입하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를
“기한의”로 하고,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며, 제2항의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하고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를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로 하고,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의 “납기한의”를 각각 “기한의”로 하고 “납기한의 연장기한내”를 “연장된 기한내”로 하고 기간을 정하여 다음의 “납기한을”을 “다시”로 하며, 제5항의 “납기한”을 “신고납부 기간”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제1호 “800원”을 “1000원”으로 하며, 제2호의 구분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하고, “군내에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며,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각각 “과세기준일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며,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각각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를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하며,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19조 제1항중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를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이라”로 하고,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을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로 한다.

제22조중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를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중 “법 제202조 제1항의”를 “법 제9조의 2의 ”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제29조 내지 제31조의”로 한다.

제38조중 “다음에”를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로 하고, 제1호 내지 제2호를 삭제한다.

제49조 제1항중 “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를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의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 14의”를 “법 제 234조의 12의”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각각 “비과세”로 한다.

제53조 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각각 “비과세”로 한다.

제54조 제1항중 “법 제238조의 2의”를 “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의”로 하고 “비과세”를 각각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중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부 칙

①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구조문 대비 표

(양주군군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 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 규칙"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 청서를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 법 제26조 의 2 및 ----- 기한의 ----- ----- ----- 기한이 만료되기 전 -----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 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② ----- 기한의 ----- ----- -----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 -----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 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 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기한의 ----- ----- ----- 기한의 ----- ----- ----- 연장된 ----- ----- ----- 기한내 ----- ----- ----- 다시 ----- -----
④(생략)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 로 부터 징수한다.	④(현행과 같음) ⑤ 신고납부기한 ----- ---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세율) ①(생략)</p> <p>1. 개인: 800원</p> <p>2. 법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 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 로서 군내에 종업원(대통령 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 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td><td>(500,000 원)</td></tr> <tr> <td>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 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 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 는 사업소를 둔 법인 </td><td>(350,000 원)</td></tr> <tr> <td>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 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td><td>(200,000 원)</td></tr> </tbody> </table>	구 분	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 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 로서 군내에 종업원(대통령 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 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500,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 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 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 는 사업소를 둔 법인	(350,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 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200,000 원)	<p>제15조(세율) ①(현행과 같음)</p> <p>1. 개인: 1,000원</p> <p>2. 법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 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 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 인</td><td>(--)</td></tr> <tr> <td>-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 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 하는 법인</td><td>(--)</td></tr> <tr> <td>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세율	-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 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 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 인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 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 하는 법인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	(--)
구 분	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 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 로서 군내에 종업원(대통령 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 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500,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 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 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 는 사업소를 둔 법인	(350,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 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200,000 원)																
구 분	세율																
-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 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 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 인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 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 하는 법인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	(--)																

현 행	개 정 안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인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100,000 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 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 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기타법인 (50,000 원)	(---)
②(생략) 제16조(납기등) ①주민세 균등할의 납기 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7조의 2의 규 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 3의 규 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②(현행과 같음) (삭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 년월일 등록번호, 등록 년월일, 용도</p> <p>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p> <p>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p>	<p>제17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 ----- -----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 5. (현행 제6호와 같음) ----- 6. (현행 제7호와 같음) -----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22조(증과 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p>	<p>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 ----- 제22조(증과 대상지역) ----- ----- 제3목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p>

현 행	개 정 안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24조(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삭 제)
는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 년월	-----
일, 등록번호, 등록 년월일, 용도, 취득가격	-----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
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
야 한다.	-----
1.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	-----
2. 건설기계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	-----
게 된 때	-----
3. 국외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국내에	-----
서 사용하게 된 때	-----
4. 비과세 건설기계가 과세 건설기계로	-----
된 때	-----
5. 과세 건설기계가 비과세 건설기계로	-----
된 때	-----
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신청) 법	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의 2의 -----
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 제83	-----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	-----
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 사실이 발생한 날	-----
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
한다.	--.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종군자등의 감면신청) ①영제1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 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 동 원 또는 전사,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 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 다.	(삭 제)
제33조(감면 결정 통지) 군수는 제29조 내지 제32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 다.	제33조(감면 결정 통지) ----- 제29조 내지 31조의 ----- ----- ----- ----- --.
제38조(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 10,000원 2. 여비: 5급 공무원 기준	제38조(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 양주군각종위원회실 비변상조례에 ----- 1. - 2. (삭제)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 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 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 -----.

현 行	개 정 안
1. - 4.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②법 제 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
	로 한다.
제50조(토지에대한 신고 의무) ①(생략)	제50조(토지에대한 신고의 의무) ①(현행과 같음)
②법 제234조의 12 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 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 는 감면 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4조의 12의 ----- -----비과세----- -----비과세----- ----- ----- ----- -----
제53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 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 음할 수 있다.	제5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비과세----- ----- ----- ----- ----- -----
제54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 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자가 도시 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자유가 없게 되었 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제54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 290조 제1항의 -----비과세 또는 감면 -----비과세 또는 감면 ----- ----- -----

현 행	개 정 안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61조(납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수에 게 자진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삭 제)
제63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 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일 10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 ----- 비과세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